

SW중심대학사업운영규정

2018.12.27.제정 2020.09.01.일부개정

<SW중심대학사업단>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는 「SW중심대학사업(National Program for Excellence in SW)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동명대학교(이하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SW중심대학사업단(이하“SW사업단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SW중심대학 지원사업의 추진과 사업비 관리·집행 등 사업단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사업기간 및 사업연도) SW사업단의 사업기간은 본 대학교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체결하는 「SW중심대학 지원사업 협약서」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. (개정 2020.9.1.)

제4조(기능) SW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SW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SW교육과정 교육체계 기반 조성
2. SW사업단 연차, 중간, 종합계획 수립 및 실천
3. SW사업단 SW전문/융합 인력양성
4. 개별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수행 및 사업비 관리
5. 지역사회 및 산업체 산학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제반사업
6. 기타 SW사업의 발전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

제5조(조직) SW사업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SW사업단장과 다음 각 호의 센터(팀) 및 센터(팀)장을 둔다. (개정 2020.9.1.)

1. 삭제 <2020.9.1.>
2. AI미래교육센터
3. SW기초교육센터
4. SW산학융합센터
5. 삭제 <2020.9.1.>
6. SW가치확산센터
7. SW행정지원팀

제6조(SW사업심의위원회) ① SW사업단의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과 추진 방향을 결정하

고 중요사항을 변경, 심의, 자문 등을 위하여 SW사업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 SW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.

제7조(SW교육과정혁신위원회) ① SW사업단의 산업수요 반영 교과목 신설 및 개선, 교과목 운영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SW교과과정혁신위원회를 둔다.

② SW교육과정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.

제8조(SW연계전공운영위원회) ① SW사업단의 SW연계전공 운영 및 심의, SW연계전공을 통한 SW융합전공교육의 효율적 운영과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SW연계전공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SW연계전공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.

제9조(SW자체평가위원회) ① SW사업단장은 SW사업단의 성과 및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한다.

② SW사업단의 연차, 중간 및 종합평가 및 사업의 모니터링, SW사업단 성과의 가치 확산 등의 평가를 위하여 SW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
③ SW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.

제10조(SW사업운영위원회) ① SW사업단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실천, 관련 프로그램의 진행 및 관리,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과 결과 등 세부 실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SW사업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SW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.

제11조(사업비) SW사업단의 사업비(이하 “사업비”라 한다)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정보통신기획평가원)가 SW사업단으로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을 말하며, 사용 용도에 따라 직접비, 간접비로 구성한다. (개정 2020.9.1.)

제12조(사업비 집행) ①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편성된 세부사업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사업비 주요 집행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「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」을 따르며, 사업비 세부 집행 운영 및 관리는 SW사업단의 「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」을 적용한다.

③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.

제13조(사업비 관리) 사업비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, 국고 지원금의 입·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